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8
----------	-----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5일, 이현찬 의원(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현찬 의원)

가. 제안 이유

- 1)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및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한도인 100분의 30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결정함(안 제7조제2항).
- 2) 관리비의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인의 홈페이지 또는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3)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설립·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통합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 3) 입법예고 결과(2015. 6. 18 ~ 2015. 6. 25)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안은 서울혁신파크¹⁾의 운영 및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안 제7조제2항), 관리비 공개 방법과 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운영 및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입주자 모집 개요 〉

- 모집대상 : “서울혁신파크” 약속에 공감하는 영리/비영리 목적 개인 및 단체
 -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원 간 융합과 창의가 일어나도록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단체를 유치하고자 함
- 활동위치 : 1동(3층 ~ 6층) 및 야외공간(중소규모 건축물 포함)
 - 1동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야외공간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장소로 개방
 - ※ 야외공간(중소규모 건축물 포함) 관련은 별도 사업 계획 수립
- 모집유형
 - 코워킹스페이스(1동) : 공간의 독점이 없는 개방 공간으로 월이용료(1인당 3만원) 부과
 - 개인 사무실(1동) : 일정 공간을 개인/단체가 점유하고, 사용료(임대료) 부과
 - ※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야외공간 :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개방·활용
- 선정기준 : 1차(서류 심사) 및 2차(면접 심사)로 선정
 - 1차 : 서울혁신센터가 자체적으로 서류(동영상)를 통해 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혁신파크와의 연계성을 심사한 후 통과 여부(60점 이상 취득) 결정
 - 2차 : 관련분야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협업 등을 키워드로한 오픈테이블 형식의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 결정
- 추진일정

모집공고	설명회	1차 선정	2차 선정	발표	입주자 협약	입주
온/오프라인	활동단체	동영상/서류	그룹토의	최종 발표	사용허가	1동
5.15~6.7	5.29 / 6.3	6.10~12	6.17~19	6.22	6.23~25	6.26~30

- 현행 조례 제6조(사용료)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건물 및 부지, 행정재산)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는 「공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1) 혁신주체에게 특화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추기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가칭)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는 국내외 혁신기관을 유치·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

제7조에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공물법」 제22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물법」 제24조에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와 같이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근거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요율의 한계를 넘어 규정하는 것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공물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²⁾하여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공물법」 제24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공물법」 근거 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혁신기관·단체·기업 등을 적극유치하고 다양한 혁신기관들의 사회적 혁신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입주자 사용료 감면에 따른 3억원의 세외수입 감소(비용추계 결과-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다른 행정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우'와 관련하여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추계비용〉

□ 추계비용 : 302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입주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제7조제2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년	계
세입 ㉠	30%감면 사용료 (제7조2항)	△33	△66	△67	△67	△69	△302
세출 ㉡	서울혁신센터설 치운영	0	0	0	0	0	0
계(㉡-㉠)		33	66	67	67	69	302

※ 비용추계 전제

- '15. 6월 기준 입주자 모집계획이 확정된 서울혁신파크 1동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고 타 법률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임대면적 전체를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가정
- 건물시가표준액은 '15년부터 건축물 개·보수 예정으로 상각률 산정이 불가하므로 건물 평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토지평가액은 '15년 기준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3.43% 적용
- 조례개정전 적용되던 50%감면은 사실상 미적용 되어 30% 감면기준 추계

○ 비용추계 방법 = 감면 전 사용료 - 감면 후 사용료

○ 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15년 7월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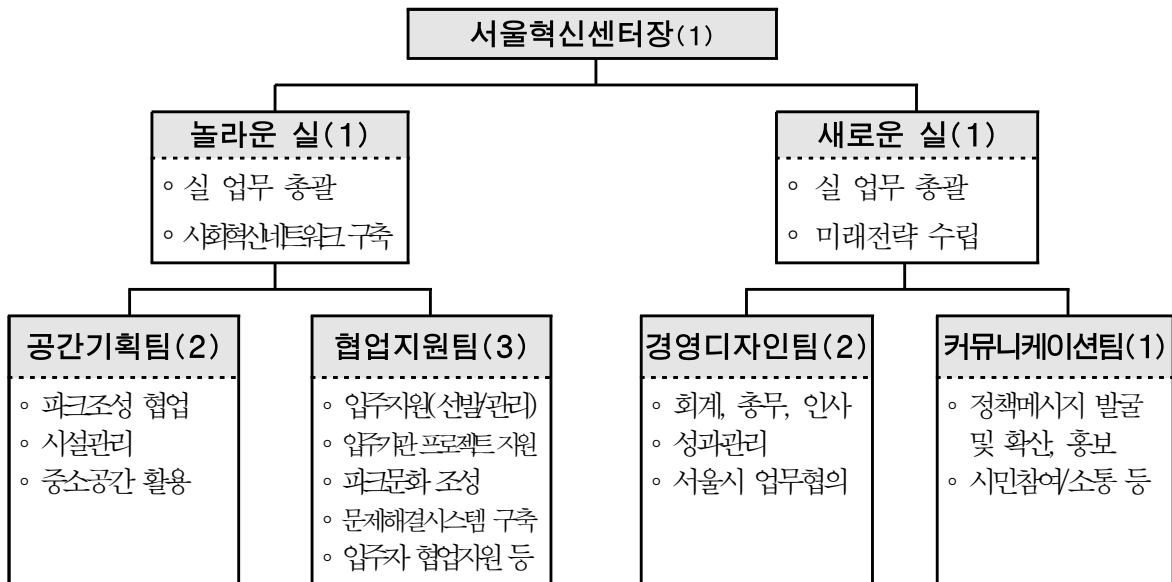
- 안 제8조제2항은 관리비를 연1회 이상 관리인의 홈페이지 또는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2014. 12)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여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협약(4. 13)을 체결한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고,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 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14.10.27.
-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4.12.19.
-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계획 : '14.12.26.
- 위탁기관 공개모집 : '15. 1. 5.~ 2.10.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5. 2.16.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 '15. 2.25.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5. 4.13.

〈 서울혁신센터 수탁위탁 현황 〉

- 수탁 기관 :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대표자 : 탁무권)
- 소재지 :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 위탁 기간 : 2015. 4.13. ~ 2018. 3.31.(3년)
- 민간위탁금 : 2,744백만원
- 위탁 사무 :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 서울혁신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 유치·관리
 -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혁신 프로그램 운영 및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 그 밖에 혁신과 관련한 사무
- 정원 및 조직 : 총 11명 (2실 4팀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u>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② ----- ----- -- <u>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u></p>
<p>제8조(관리비)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u>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u></p>	<p>제8조(관리비) ② ----- ----- 관리비 내역을 <u>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u></p>
<p>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u>시설 및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p>	<p>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위하여 <u>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p>

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④ 그 밖의 서울혁신파크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를 준용한다.

능을 수행한다.

1.~ 6. (현행과 같음)

④ (삭제)